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6. 23.(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2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2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21-25-075)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주)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만트릭버스코리아(주), (주)재원씨앤씨, (주)유니크, (주)티와이엠아이씨티, (주)비티씨씨큐, 에이치디에스(주), (주)지에스아이엘 등 8개 법인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 허가 조건입니다. 1.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2.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시 해당 이용자에게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을 것, 3. 소요 설비 및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계획,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대책 등에 관하여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의 이행실적을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법」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허가신청 접수를 받았고, 만트릭버스코리아(주) 등 총 12개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법인 주요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임원 및 법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결격사항 해당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무, 영업, 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 총 9명으로 구성하여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기준은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 만트릭버스코리아(주) 등 총 8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그리고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주)카비, (주)와이파이브, (주)무빙, (주)마인드허브의 경우 모두 총점 70점에 미달하였고, (주)무빙과 (주)마인드허브의 경우 일부 심사사항별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에 해당하여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허가 신청법인별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는 <붙임 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허가조건입니다.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주차장 앱에서 위치정보 원래 목적했던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된 사례가 적발된 것이 있었지요?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앱이 하나가 있었고, 그 업체 말고 다른 몇 개 업체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에 있고, 조만간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을 오용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떤 처분을 하게 됩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대거나 또 이번에 심사하면서 봤었던 각종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런 의무들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여러 가지 제재가 가능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얼마나 더 걸립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꽤 됐지 않았습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얼추 마무리가 되었고 곧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문제는 이런 일을 할 기술적인 것을 갖추었느냐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후관리가 꽤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저희가 작년 가을에도 허가를 내준 위치정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다든지 몇 가지 사항들이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조만간 안전으로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법인은 허가조건 부과를 토대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보니까 5월 기준으로 전체 260개가 되었는데 아마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사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효재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에 따른 부실관리나 남용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만트릭버스코리아(주) 같은 경우 총점 100점 만점에 70.37점으로 아슬아슬하게 기준점을 통과했는데, 이런 업체는 좀 더 요주의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지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정례화해서 부실한 관리나 남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태점검과 현장조사를 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직원 분들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 허가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규 허가를 받은 8개 법인은 관련 법령과 허가조건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처에서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후점검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심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적격업체의 경우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서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개인위치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이런 식으로 부실한 형태로 응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저희가 예산 사업을 통해 위치정보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을 원하는 법인들은 센터를 방문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허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희가 자문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해서 허가 신청을 하는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규정을 잘 몰라서 준비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재차, 3차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신청할 때부터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1-25-076)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광고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네이버(주)에게 미디어랩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미디어랩사인 제이티비씨미디어컴(주), (주)미디어랩에이,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의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네이버(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21년 5월 1일 공정위가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게 된 네이버(주)를 상호출자 제한집단인 대기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4일~17일까지 이러한 네이버(주)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을 통보하였고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규정입니다. 미디어랩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은 미디어랩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미디어랩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위반사항입니다. 네이버(주)는 미디어랩사인 제이티비씨미디어컴(주)의 주식을 19.92%, (주)미디어랩에이의 주식을 19.8%,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의 주식을 19.54%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으로 지정된 네이버(주)는 미디어랩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미디어랩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처리방안입니다. 피심인 의견은 피심인은 미디어랩법에 따라 미디어랩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디어랩 3사와 주식 처분방법을 논의하여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고, 가급적 주식 처분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디어랩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2022년 1월에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은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채널A, JTBC, TV조선 전부 다 비상장주식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장외거래를 통해 매각해야겠네요? 그런데 이 주식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주식들입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일반 상장주식처럼 활발하게 거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처분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지금 종편이 경영이 매우 어려워져서, 여기는 대주주가 이 주식을 다시 구입할 수도 없는 상태이지요? 시장에서 팔아야만 되지 않습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만약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러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제재조치를 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 여론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특정 언론사가 여론시장에 과도하거나 또는 독점적인 여론 형성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것이 지금의 법입니다. 대기업집단의 기준선이 10조원 아니겠습니까? 10조원인데 그 10조원이 원래 3조원이었던 것이 2008년에 10조원이 됐지요? 2008년에 10조원으로 지정할 때 공기업을 제외하고 10조원 이상 기업이 17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규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이라는 기준 자체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광주방송도 대주주인 호반건설이 10조원이 넘어서 호반건설은 일부 주식을 팔고 나와서 전자신문을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울산방송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연말이 되면 SBS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을 텐데, 그런 여론시장에서의 왜곡을 없애기 위해 이런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나름대로의 장치를 해놓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시대변화에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가지 점에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10조원이 과연 적절한 기준이냐 하는 점에 관한 문제제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여론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콘텐츠 경쟁력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입장벽을 만들어놓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플랫폼이 매우 많이 등장해서 기존에 있던 여론시장의 지배력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되는 지상파, 또는 종편의 여론 지배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넷플릭스가 한국의 콘텐츠 시장을 휘젓고 있고, 또 곧 디즈니도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방통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네이버에 대한 이 조치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대기업 지정 자산 기준을 고정금액으로 설정한 종전 방식을 보니까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그 방식이 국내 총생산에 연동해서 GDP의 0.5% 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것으로 개선해 봐도 대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방송의 시장을 확대해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대기업 지정과는 별개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지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현행법상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제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법 위반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최초 취득 시의 위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 사무처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새로 공정위가 마련하고 있는 규정이 GDP가 2,000조원이 넘었을 때 0.5%로 하고 있지요? 현재 계획으로 2,000조원이 넘었을 때가 언제쯤으로 보입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가 그것까지 알기는 어렵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명목 GDP가 1,933조원입니다. 그래서 2,000조원이 언제 될지 정확하게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공정위는 그런 안을 마련했지만 방금 김창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송법에서 대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은 커졌는데 옷은 그대로 있어서 옷이 맞지 않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의 합리성, 적절성 그리고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현행법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네이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위원회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미디어랩법에 대기업 소유제한 규제를 두었던 것은 대기업은 주요 광고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기업 활동과 광고 영업을 일정한 정도 분리함으로써 광고 판매대행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피심인도 법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시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들 동의하셨고, 정책적 고려는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리하면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경과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팔려고 하는 의도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이 모호한 측면들이 있어서 제도는 예측 가능하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2021-25-077)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다> “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와 통합하여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 되는 프로그램들의 ‘연속편성’ 관련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21년 4월 30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되었고, 2021년 5월 12일 「방송법 시행령」 위임에 따른 고시 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이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연속편성 판단 세부기준입니다.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통합하여 중간광고의 시간·횟수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연속편성 판단 시 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 동일성 그리고 연속편성된 선·후행 프로그램 간 연결 관련 고지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구성상의 차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타채널에서의 방영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속편성에 대한 적용 예외입니다.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의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이나 특별편성 등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제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속하여 편성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광고와 통합기준이 적용되는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속편성하지 않고 기 방송한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재방송하는 경우, 또 한 편이 80분 이상인 영화를 2개 이상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경우, 총 편성시간의 합이 100분 이상인 생방송 프로그램으로서 제작

인원 교체 등 제작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프로그램 사이에 간격이 필요한 경우, 재난방송, 선거 개표방송, 시상식, 올림픽 등 특별편성이 있는 경우, 연속물을 결방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편성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고시 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또 방송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 안내자료를 발간·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고시 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 이후 7월부터 9월 까지 법규 준수 모니터링 및 방송사에 대해서 방송법령 관련 안내·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것을 하면 지난번에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관련 후속조치들은 대부분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7월 1일자 시행인데 시행에 문제없게 준비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추가로 하는 것이 모니터링이 사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고 나면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가져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큰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 볼 계획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7월 1일부터 중간광고가 본격적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허용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에서 시청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지난 5월 이미 위원회에 보고된 만큼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고시 제정과 시행으로 방송사들의 분리편성광고와 같은 편법광고 논란이 이제는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행 초기에 사업자들이 규정에 대한 이해 미숙으로 법규 위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관련 방송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이전에 안내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시행 초기단계에서 광고시장 준수 및 시청자 고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시청자 혼란을 줄이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청자나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낡은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편법 분리편성광고로부터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 도입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지, 방송광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1-25-078)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라>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편성평가정책과장 직무대리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편성규제 관련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편성 자율성 확대 및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4월 30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고, 5월 12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6월 7일 행정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2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완화입니다.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정기간 변경에 따른 예외조항 변경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매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 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에서 '연간 각 4편 또는 각 24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로 예외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편성비율 산정기간 간소화입니다.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하였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과 1개국 수입물 편성비율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완화입니다. 지역민방의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은 3.2%인 반면, 지역MBC는 MBC·SBS와 동일한 30%를 적용받고 있어 편성 자율성이 저하되고 규제부담이 과도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경영여건 때문에 본사 수중계, 저렴한 재방프로그램 구매 등으로 외주비율을 충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높은 의무비율은 지역성 구현을 위한 자체제작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방송의 편성 자율성 확대 및 사업자 간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MBC의 순수외주 의무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문 정비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예고 결과 및 검토 의견입니다. 단순 찬성 의견이 1건 있었고, 이외에 JTBC의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의 예외조항을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연간 각 4편 또는 각 480분 이내로 편성'한 경우로 완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240분으로 예외규정을 정한 것은 산정기간 변경에 따라 산술적으로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더해서 예외조항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규제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규제 형해화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원안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관보 게재하고, 2022년 1월 1일 「방송법 시행령」 및 이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번 편성고시 개정이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특히 지역방송이 보다 자유로운 창작 환경에서 양질의 지역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역 시청자들에게 보다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보다 과감한 방송편성 규제 혁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 현재 편성의 법 원칙을 포함한 전면 개편방안을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들이 글로벌 사업자와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안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이번 편성규제 완화로 방송사업자들의 편성 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방송이 처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을 완화해서 지역방송의 편성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규제 개선으로 방송사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MBC에서는 지역방송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민과 함께 하는 양질의 지역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개정안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사무처에서는 올해 중 편성규제의 전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방송사의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6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2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4분 폐회 】